

※ 제3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사업 연도	2024.01.01 ~ 2024.12.31	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	법인명	주식회사 티앤알바이오랩
			사업자등록번호	140-81-73187

구분	①요건	②검 토 내 용			③적합 여부	④적정 여부	
중 기 업	⑩ 사 업 요 건 ①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③ 「법인세법」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※ ②, ③은 2025.0.0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	구분	기준경비율코드	사업수입금액	(17)	(26)	
		업태별				(적합) (Y)	(부적합) (N)
		(01) (제조업)업	(04) 242301	(07) 4,873,728,487			
		(02) ()업	(05)	(08)			
		(03) 그밖의 사업	(06)	(09)			
계			4,873,728,487				
중 기 업	⑪ 규 모 요 건 ○아래요건 ①,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1의 규모기준("평균 매출액등" 은 "매출액" 으로 봄) 이내일 것 ②출업제도 -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	가. 매출액			(18)	(적합) (Y)	
		- 당 회사 (10) (48.7 억원)					
		- 「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」 별표1의 규모기준 (11) (800 억원) 이하				(적합) (Y)	
		나. 자산총액 (12) (754.9 억원)				(부적합) (N)	
중 기 업	⑫ 독 립 성 요 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	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•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어야 할 것 •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(⑩의 ① 기준) 이내일 것			(19)	(적합) (Y)	
		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[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5개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)]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,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○사유발생 연도 (13) (년)			(20)		(적합) (Y)
중 기 업	⑬ 유 예 기 간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일 것	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[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5개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)]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,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○사유발생 연도 (13) (년)			(20)	(적합) (Y)	
		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[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5개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)]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,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○사유발생 연도 (13) (년)			(20)	(적합) (Y)	
소 기 업	⑭ 사 업 요 건 ①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3의 규모기준("평균매출액등" 은 "매출액" 으로 봄) 이내일 것	중소기업업종(⑩)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, 독립성요건(⑫) 을 충족하는지 여부			(21)	(27)	
		○ 매 출 액 - 당 회사 (14) (48.7 억원)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3의 규모기준 (15) (120.0 억원) 이하			(22)	(적합) (Y)	



구분	①요건	②검토내용	③적합여부	④적정여부
중 견 기 업	⑩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	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 ⑩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	(23) (Y) (N)	(28)
	⑩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%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 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) 	(24) (Y) (N)	적 (Y)
	⑩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(구 조세특례제한법) 제5조제1항(2020. 12. 29. 법률 제 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: 1천5백억원 미만(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) ②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1호기목2):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: 3천억원 미만	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	(25) (Y) (N)	부 (N)
	0.0 억원 0.0 억원 0.0 억원 0.0 억원			